

- 모두의 공익활동, 연결하는 시민사회, 힘이 되는 경기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26~2028)**



경 기 도
[소통협치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체계도

| | | |
|----------------------|---|--|
| 비 전 | “모두의 공익활동, 연결하는 시민사회, 힘이 되는 경기” | |
| 3대 전략목표 | 7대 전략과제 | 15개 실행과제 |
| 1 지속 가능한 지원 | ①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 ②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여건 조성 ③ 공익활동 사회경제 기반 형성 | 1-1-1.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1-1-2.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 1-2-1. 공익활동 단체와 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 1-2-2. 지원사업 개선과제 추진 1-3-1. ^(가) 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1-3-2.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
| 2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 | ① 민·관, 관·관, 민·민 협력 기반 추진체계 구축 ② 시·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시·군 협력 강화 | 2-1-1. 공익활동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2-1-2. 민·관·정 간담회 추진 ^(가) 공익활동 거버넌스 구축 2-1-3.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2-2-1. 시·군별 협력 주체 발굴 지원 2-2-2.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 3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 ① 시민사회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 제고 ② 공익활동 영역 공론 활성화 | 3-1-1. 공익활동 사회적인정TF 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 3-1-2. 공익활동 공동캠페인 기획·추진 3-2-1.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공익활동제도개선분과위 설치) 3-2-2.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가) 공익활동컨퍼런스 개최 |

| | |
|-----------------------------------|----|
| I . 수립배경 | 1 |
| 1. 기본계획 수립배경 | 1 |
| 2. 국내현황 | 1 |
| II . 추진방향 | 3 |
| 1. 기본계획 추진방향 | 3 |
| 2. 경기도 현황 | 4 |
| III . 비전과 목표 | 5 |
| 1. 비전 | 5 |
| 2. 3대 목표 및 7대 전략 | 5 |
| IV . 목표별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 6 |
| 1. 지속가능한 지원 | 6 |
| 2.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 | 7 |
| 3.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 8 |
| V . 실행과제별 세부사업 | 9 |
| VI . 연도별 추진계획 | 30 |
| 1. 실행과제별 소관부서 현황 | 30 |
| 2. 연도별 추진계획 | 31 |
| 3. 연도별 예산계획 | 32 |
| VII . 참고자료 |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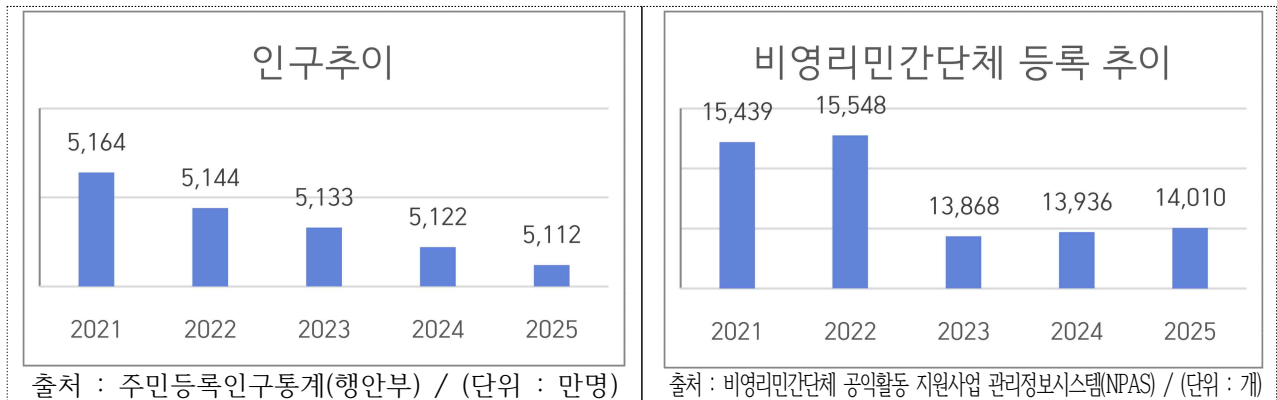
I 수립배경

1. 기본계획 수립배경

- 수립목적 : 경기도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도민 참여 기반의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
- 법적근거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환경변화
 - 시민사회 정책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정치·사회적 조건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는 불안정성을 나타냄
 - 최근 들어 시민들의 공익활동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시민참여기본법안」^{이해석의원 대표발의}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2026년, 제1·2기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반영한 기본계획 마련 필요

2. 국내현황

- (인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추이) 인구는 기존 감소 추세대로 '21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 비영리민간단체는 증가세를 보인다 '23년도에 급감 후 유지하는 변화를 보임



- ☞ 전체 시도 중 경기도가 인구 전국 1위 (1,373만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개수 전국 1위 (2,313개) ['25년도 12월 기준]

□ (관련법령) '25. 9. 국정과제 확정에 따른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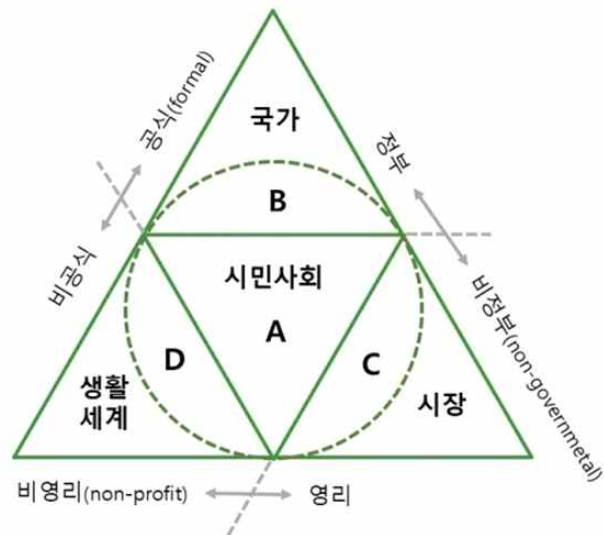
- ('03.09월)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국무총리 훈령 운영)
- ('20.05월) 문재인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
- ('22.10월) 윤석열 정부 동 규정 폐지
- ('25.09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9번째 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에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 포함
- ('25.12월) 시민참여기본법(안) 국회 의안 제출

□ (사회변화) 한국 사회는 복잡·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인 시민사회*도 다양한 의견과 역할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필요

'시민사회의 범위와 구성 부문'

'시민사회의 발전, 그리고 시민사회와 다른 영역 간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 본원적인 시민사회 부문과 함께 시민사회와 다른 영역 간 융합이 이뤄지는 부문도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B+C+D 부문)로 포괄할 수 있음.

- 시민사회와 정부 영역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거버넌스'나 '협치' 부문(그림에서 B부문)¹⁾
- 시민사회와 시장 영역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C부문)²⁾
-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영역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유연자발집단'이나 '비공식 공익활동'이 이뤄지는 부문(D부문)



출처 : 조철민 · 박영선 · 서미화, 2025. 「2025.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1) 여기에는 중간지원조직이나 협치,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음.
 2)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활동 주체들이 포함될 수 있음.

1. 기본계획 추진방향

- 제1기 기본계획('20~'22)에는 '초창기 기반 구축과 시군 지역과의 연결'에, 제2기 기본계획('23~'25)의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의 시도와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제3기 기본계획('26~'28)에서는 제1·2기 기본계획 성과와 과제* 반영과 함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확대·개선
 - 유기적 연결·협력으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정책추진체계 강화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및 정책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 3기 기본계획으로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유지·발전시킬 영역과 새롭게 시도할 전향적인 영역의 균형있는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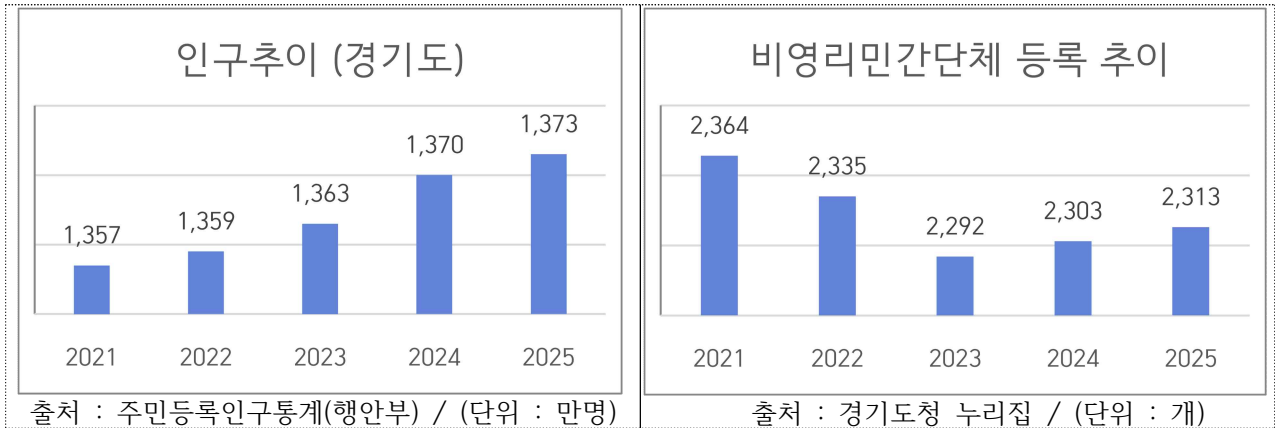
* 제1·2기 기본계획 이행성과 및 과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기('20~'22) 「비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 /1대 목표 4대 전략 14개 주요과제 - 초기단계 목표 '공익활동 지원의 전반적 토대 마련 및 공감대 확산'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및 정책 추진 | <p>(종합 평가) 1기와 2기의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풀뿌리 시민사회를 튼튼히 하고, 지역적으로 고른 성장을 지향한다는 방향에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 정책 발전 필요</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23~'25) 「비전」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3대 목표 8대 전략 18개 전략과제 - '전략구체화', '사업 확대 및 실효적 사업추진'으로 성과 도출 | <p>(향후 과제) 시군의 열악한 공익활동 현실 고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넘어 다양한 축의 연결과 협력 강화, 공익활동의 가치와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필요</p> |

출처 : 조철민·박영선·서미화. 2025. 「2025.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2. 경기도 현황

□ (인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추이) 경기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감소세를 보이다 '24년도부터 증가로 전환



☞ 경기도의 인구는 수원, 용인, 고양순 / 남부 1,014만명(73.9%), 북부 359만명(26.1%)
비영리민간단체는 남부 1,677개(72.5%) / 북부 636개(27.5%) [25년도 12월 기준]

□ (추진경과) 시민사회 활성화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 ('16.01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작
- ('19.01월)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9.02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9.06월) 「2019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19.12월)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위촉
- ('20.03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수원)
- ('21.07월)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21.12월)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위촉
- ('22.11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개소(의정부)
- ('23.03월)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4.12월)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III 비전과 목표

1. 비전 : ‘모두의 공익활동, 연결하는 시민사회, 힘이 되는 경기’

2. 3대 목표 및 7대 전략

| | | | |
|-----------|-----------------------------|--|--|
| 목표 | ① 공익활동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 | ② 공익활동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 | ③ 공익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확산 |
| | 추진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 ②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여건 조성 ③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관, 관·관, 민·민 협력기반 추진체계 구축 ② 시·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시·군 협력 강화 |

- (비전) 3기 기본계획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람(people), 방법(practice), 목적(purpose)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
- (전략목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년 동안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결과물로 비전과 전략과제의 연계, 구체성·측정 가능성·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
- (전략과제) 설정된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주요 사업과 활동으로 1기와 2기의 기본계획 전략과제 중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1·2기 기본계획 이행과제 평가 및 정책 환경분석을 통해 새롭게 도전해야 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선정
- (실행과제) 도출된 비전·전략목표·전략과제에 따라 3기 기본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발굴하여 선정

IV 목표별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1. 공익활동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

□ 추진방향

- 도민 공익활동 인식 확산 및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 지속·확대
- 공익활동 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사업 안정화와 지속적 확대·개선
- 공익활동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전략과제1)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

【실행①】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확대

【실행②】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를 위한 공유공간 확충 등 인프라 구축

- 현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사업 지속·확대 : 공익활동 주체 발굴 및 지원, 공익활동도민 접근성 제고, 공익활동 정보제공 및 확산,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공간조성 및 운영 등

- (전략과제2)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여건 조성

【실행①】 공익활동단체와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지속·확대

【실행②】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의 규모 및 방식 등 사업형태 개선

- 사업예산구조의 다각화(기부단체 등록 등 공익활동 자립), 기간(다년지원), 주체(컨소시엄), 내용(운영·기반·제도 등) 개선 필요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유무 등 경기도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센터 역할과 범위 설정 필요

- (전략과제3)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형성

【실행①】 공익활동의 사회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 및 추진 주체 구성·운영

【실행②】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담당부서와 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 해당 의제에 이해와 관심을 지닌 공익활동 주체 참여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에 관한 학습, 사례공유, 가능한 추진과제 수렴·선정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

2. 공익활동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

□ 추진방향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영역 간 협력체계 구축
- 31개 시·군 시민사회 협력주체 발굴 및 지원으로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의 연결과 협력에 기반한 공익활동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추진계획

- (전략과제4) 민·관, 관·관, 민·민 협력 기반 추진체계 구축
 - 【실행①】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업무 관·관 협력체계 구축
 - 【실행 ②】 시민사회 협력 강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정 협력체계
(가) 경기공익거버넌스* 구성 운영
 - * 공익활동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경기복지거버넌스, 경기여성거버넌스 사례 참고)
 - 【실행③】 공익활동단체와 기업 간 협력사업 확대 및 이를 촉진하는 신규 지원사업 개발·추진
- (전략과제5) 시·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시·군 협력 강화
 - 【실행①】 시·군 시민사회의 협력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와 교류를 위한 지원
 - 【실행②】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주체 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현행 도-시·군 간 협의구조 확대·개선
 - 현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사업 지속·확대 : 주제·지역·세대별 다양한 공익활동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도 시·군센터 정례회의 및 협력사업, 신규 센터 지원 등

3. 공익활동 사회적 영향력 확산

□ 추진방향

-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과 정책과정에 공익활동 주체(참여도민)의 의견 수렴·반영 강화

□ 추진계획

- (전략과제6) 시민사회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 제고

【실행①】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관련 정책 논의 및 추진 주체 구성 및 운영

-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담당부서와 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 해당 의제에 이해관심을 지닌 공익활동 주체 참여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경기도 내·외의 논의와 실천현황 수렴,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과제 도출 및 추진 역할 수행을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
-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평가, 공익활동의 경제적 가치 측정,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표준적 개념 설명, 공익활동 경력인정제 등 시의성을 반영한 정책연구 추진

【실행②】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 사회문제 해결 공동실천 범도민 캠페인 및 공익활동 인식제고 공동 캠페인 등

- (전략과제7) 공익활동 영역 공론 활성화

【실행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 시민사회활성화, 공익활동촉진 2개 분과 운영 활성화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규제개선 과제 설정, 경기도·의회 개선 권고, 개선이행 점검 기능 강화

【실행②】 경기도 공익활동 주체들의 참여 공론장 활성화 및 정책 환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기공익활동포럼, 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경기도민 정책축제 등 공론장 활성화 및 정책환류 기능 강화

V

실행과제별 세부사업

| 번호 | 실행 과제 | 계속/신규 | 페이지 |
|-------|--|--------|-----|
| 계 | 15개 | | |
| ①-①-1 |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 계속 | 10 |
| ①-①-2 |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 | 계속 | 13 |
| ①-②-1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계속 | 14 |
| ①-②-2 |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의 개선 | 신규 | 18 |
| ①-③-1 | ^(가) 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신규 | 19 |
| ①-③-2 |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 계속 | 20 |
| ②-①-1 | 관·관 협력 :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신규 | 21 |
| ②-①-2 | 민·관 협력: 민·관정 간담회, 공익활동거버넌스 | 계속, 신규 | 22 |
| ②-①-3 | 민·민 협력: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 계속 | 23 |
| ②-②-1 |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 및 지원 | 계속 | 24 |
| ②-②-2 |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계속 | 25 |
| ③-①-1 | ^(가) 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계속 | 26 |
| ③-①-2 |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 계속 | 27 |
| ③-②-1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 계속 | 28 |
| ③-②-2 |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 계속 | 29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1-1 |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 · 공익활동 아카이브 및 홍보 | 계속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민대상 공익활동 홍보사업 다각화로 인식 및 참여도 제고

* 근거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조례’로 표기)
제6조제2항제11호.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민

○ 사업기간 : 계속(기존)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218,000천원

○ 추진방향

- 공익활동 인식제고와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채널 및 콘텐츠 운영
-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 발굴 및 참여 기회 확대
- 경기지역 시민사회 주요 활동 기록 및 공유를 통한 공익가치 확산과 공익활동단체 디지털 아카이빙 역량강화

○ 사업내용

- (공익활동홍보) 센터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채널 운영 등
- (정보아카이브 운영) 아카이브에디터 운영, 공익웹진 발행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분 | 2026 | 2027 | 2028 |
|-------------------------------|------|------|------|
| 공익활동 홍보(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운영 등) | 1식 | 1식 | 1식 |
| 정보아카이브 운영 (웹진발행건) | 155건 | 165건 | 175건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산 | 218,000 | 68,000 | 75,000 | 75,000 |
| 도비 | 218,000 | 68,000 | 75,000 | 75,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①-①-1 |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 · 공익활동페스타 | 계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민대상 공익활동 참여 확산 및 공익활동가 교류의 장 마련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11호.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민

○ 사업기간 : 계속(기존)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230,000천원

○ 추진방향

- 다양한 공익활동 도민 체험 및 참여 기회 확대
- 공익활동분야 경기도 주요의제 및 정보공유, 활동가 교류의 장 마련
- 공익활동 우수사례 및 시상, 공유의 장 마련

○ 사업내용

- (시상 및 표창) 공익활동 우수사례 및 활동가 표창 (컨퍼런스 및 전시) 공익활동기록 컨퍼런스 및 전시
- (공익활동체험 박람회) 공익활동체험, 교육프로그램
- (부대행사) 플리마켓 등 문화행사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공익활동페스타 | 1회 | 1회 | 1회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230,000 | 50,000 | 80,000 | 100,000 |
| 도 비 | 230,000 | 50,000 | 80,000 | 100,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1-1 |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 · 공익해봄 프로젝트 | 계속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활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참여율 향상을 위한 공익활동 대상의 다각화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11호.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민
- 사업기간 : 계속(기존)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76,700천원
- 추진방향
 -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 발굴 및 참여 기회 확대
 - 센터를 연계 거점으로 공익단체-학교, 지역사회-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참여 기반 조성 및 공익활동 주체의 다변화 도모
- 사업내용
 - 공익활동을 중·고교의 창의적 문제해결 수업 또는 동아리 활동과 연계 하여 교육과정 내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지역(사회)문제해결, 노동권, 이민자 인식개선 등 청소년들의 시민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공익활동단체 전문성 활용
 - 청(소)년에서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대상을 확대, 시민교육 저변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공익해봄프로젝트 | 50명(4개 학교) | 100명(5개 학교) | 200명(7개 학교)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76,700 | 16,700 | 25,000 | 35,000 |
| 도 비 | 76,700 | 16,700 | 25,000 | 35,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①-①-2 |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 | · 공익활동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계속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활동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정보 축적 및 공익가치 확산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10호.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제11호.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민
- 사업기간 : 계속(기존)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134,000천원
- 추진방향
 - 이용자 친화적 UI/UX개편을 통한 공익활동 플랫폼 강화
 - 공익활동 기록활동가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자료 발굴, 2차 콘텐츠 생산 확산
 - 경기지역 공익활동단체 아카이브 역량 강화 지원
- 사업내용
 - (온라인자료관 ‘툇’) 플랫폼 운영, 자료수집 및 활성화 사업
 - (공익위키) 사이트 운영 및 활성화 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경기시민사회 온라인자료관 ‘툇’ 운영 | 1식 | 1식 | 1식 |
| 공익위키 운영 | 1식 | 1식 | 1식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134,000 | 34,000 | 50,000 | 50,000 |
| 도 비 | 134,000 | 34,000 | 50,000 | 50,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①-②-1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 공익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 계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 지원
 - 공익활동가의 활동 역량 및 지속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5호. 공익활동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
- 사업기간 : 계속(기존)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155,000천원
- 추진방향
 - 공익활동가 교육 및 훈련 맞춤형 지원으로 실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사업내용
 - (공익활동가 학교) 시·군 협력 기반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시기별 특강, 학습 워크숍 운영 등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지원) 지역 문제 해결 역량강화 교육 지원(3개 단체 이상 컨소시엄)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공익활동가학교 | 6회 | 8회 | 8회 |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지원 | 11건 | 15건 | 15건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155,000 | 45,000 | 55,000 | 55,000 |
| 도 비 | 155,000 | 45,000 | 55,000 | 55,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①-②-1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 공익활동상담소 | 계속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지속성 있는 공익활동 지원
- 공익활동단체의 운영 구조·역할·체계 점검 및 전환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4호.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방안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익활동단체
- 사업기간 : 계속(기존)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81,000천원
- 추진방향
 - 단체설립·운영, 법률·세무·회계·노무 등 전문가 매칭 상담·컨설팅 지원
 - 공익활동단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 및 조직변화 전략 수립 과정 지원
- 사업내용
 - (공익활동상담소) 전문가POOL 구성·운영 / 1:1 상담·컨설팅 등
 - (조직변화지원) 조직 진단 및 조직변화 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워크숍·컨설팅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공익활동상담소 | 50건 | 60건 | 60건 |
| 조직변화지원 | 7개 단체 | 10개 단체 | 10개 단체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81,000 | 21,000 | 30,000 | 30,000 |
| 도 비 | 81,000 | 21,000 | 30,000 | 30,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①-②-1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 비영리스타트업 연차별 종합지원사업 | 계속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활동단체의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발굴 및 체계적 지원
- 체계적 비영리스타트업 발굴과 설립 지원으로 공익활동 생태계 지속성 제고
 -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3호 공익활동 환경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제4호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방안, 제10호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익활동가, (예비)공익활동단체
- 사업기간 : 계속(기존)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362,300천원
- 추진방향
 - 자율성 기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을 위한 공익단체 사업비 지원
 - 공익활동의 새로운 주체 발굴을 통한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보
- 사업내용
 - (공익활동단체지원) 공익활동단체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지원
 - (비영리스타트업연차별종합지원) 공익활동단체 체계적 인큐베이팅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공익 활동단체 지원사업 | 16건(신규8/연속8) | 16건(신규8/연속8) | 16건(신규8/연속8) |
| 비영리스타트업연차별 종합지원사업 | 5건(신규3/연속2) | 7건(신규4/연속3) | 9건(신규5/연속4)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362,300 | 102,300 | 120,000 | 140,000 |
| 도 비 | 362,300 | 102,300 | 120,000 | 140,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①-②-1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성평등기금) | 계속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 지원

*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6조,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 내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기간 : 계속(기존)

○ 사업주체 : 경기도(소통협치관, 여성정책과, 기후정책과)

○ 소요예산 : 7,075,000천원(소통 36.25억원, 여성 19.5억원 기후 15억원)

○ 추진방향

- 공익사업 지원을 통한 단체 활동역량 증진 및 전문성 강화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마련, 사회전반의 성평등 수준 향상 도모 및 민간차원의 환경보호 실천 지원

○ 사업내용

- (소통협치관)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으로 단체별 성장지원 및 공익저변 확산
- (여성정책과) 가족친화·성별기반 폭력으로부터 안전·여성사회참여 확대·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및 가치실현의 4개 분야 지원
- (기후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등 13개 분야 환경보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 | 85개 단체 | 90개 단체 | 90개 단체 |
| 성평등 공모사업 | 30개 단체 | 30개 단체 | 30개 단체 |
| 환경보전 교육 프로그램 | 20개 단체 | 20개 단체 | 20개 단체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7,075,000 | 2,275,000 | 2,400,000 | 2,400,000 |
| 도 비 | 7,075,000 | 2,275,000 | 2,400,000 | 2,400,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①-②-2 |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개선 | ·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 신규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활동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지하고 기반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방식 개선 및 제도 개선 필요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6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및 연구조사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익활동단체 등
- 사업기간 : 신규
- 사업주체 : 경기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방향
 - 공익활동사업 현장 여건에 부합한 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
- 사업내용
 - (사업개선) 단체 지원사업의 대상 다양화(컨소시엄 구성 등), 지원방식 다변화 추진(단체 자생력 강화방안 구상 등)
 - (제도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행정처리 간소화 및 인건비 지원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공익활동지원사업 개선 | 1식 | 1식 | 1식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0 | 0 | 0 | 0 |
| 도 비 | 0 | 0 | 0 | 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①-③-1 |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TF 운영 | 신규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활동 사회경제여건 개선으로 비영리일자리 시장 확대 및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비용 절감 방안 제공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9호.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익활동단체, 비영리일자리 분야 유관기관, 전문가 등
- 사업기간 : 신규
- 사업주체 : 경기도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추진방향
 -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인식개선, 관심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논의
 -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유관기관 협력 논의
- 사업내용
 - (TF구성 운영)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개선을 위한 협업 TF구성
 - * 유관기관 : 도 일자리부서 및 일자리 재단, 사회적경제원 등
 - (정책의제 도출) TF 활동을 통한 의제도출 및 시범사업 추진('28~)

□ **연차별 추진계획**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TF구성 운영 | 구성 | 구성·운영 | 구성·운영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20,000 | 0 | 5,000 | 15,000 |
| 도 비 | 20,000 | 0 | 5,000 | 15,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①-③-2 |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비영리일자리 활성화) | · 공익활동 디딤돌 지원사업 | 계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활동단체 자조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
- 경기도 청년(도민)과 공익활동단체 연계 비영리일자리 기반 조성
-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3호. 공익활동 환경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제4호.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방안, 제9호.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
- 사업기간 : 계속(기존)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1,800,000천원
- 추진방향
 - 비영리일자리 인식개선, 관심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도입
 - 경기도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발굴 및 훈련과정 지원으로 공익활동 지속성 제고
 - 경기도 청년의 지역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공익활동 경험 제공
 - 사업효과 및 발전방향에 따라 청년뿐만아니라 중장년, 노년층까지 대상 확대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와 청년(도민)의 매칭,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공익활동단체 리더십프로그램 운영 등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공익활동 디딤돌 지원사업 | 12건 | 20건 | 35건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1,800,000 | 300,000 | 500,000 | 1,000,000 |
| 도 비 | 1,800,000 | 300,000 | 500,000 | 1,000,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②-①-1 | 관·관 협력(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 공익활동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신규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기도 공익활동 관계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연계 강화로 공익활동 정책 실효성 제고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3호. 공익활동 환경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 공무원 등
- 사업기간 : 신규
- 사업주체 : 경기도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방향
 - 도 관계부서 간 정보공유 및 사업구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연계강화 및 공익활동의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 사업내용
 -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공동체·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 비영리법인·민간단체 관련 지원사업 추진 주요부서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도 관계부서 협의체 | 구성 | 구성·운영 | 구성·운영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0 | 0 | 0 | 0 |
| 도 비 | 0 | 0 | 0 | 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②-①-2 | 민·관 협력(민·관·정 간담회, 공익활동 거버넌스) | (가)경기공익거버넌스 구성·운영 | 계속, 신규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로 사회문제해결 및 관련 정책 협력 강화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10호.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민, 공익활동가, 전문가 등
- 사업기간 : 신규
- 사업주체 : 경기도
- 소요예산 : 180,000천원
- 추진방향
 - 사회문제 해결 협력 및 정책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활성화
 -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로의 발전방향 제시
- 사업내용
 - ((가)경기공익거버넌스) 관계부서 협의체, 민·관·정간담회 등 연계 추진, 기존 민관협력 체계 고도화

연차별 추진계획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가)경기공익거버넌스 | 민·관·정간담회 운영 | 구성 | 구성·운영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180,000 | 60,000 | 60,000 | 60,000 |
| 도 비 | 180,000 | 60,000 | 60,000 | 60,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②-①-3 | 민·민협력(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 · 17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협력사업 | 계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기도 내 기업과 단체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 및 공익활동 확대와 사회적 가치 확산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3호. 공익활동 환경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제10호.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익활동단체, 경기도내 기업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204,000천원
- 추진방향
 - 기업-공익활동단체의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네트워크 강화
 - 기업 ESG 영역 성과지표에 비영리일자리 활성화 부문 반영 추진
- 사업내용
 - (협력사업) 기업-단체의 공익활동 협력 사업 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협력 사업 | 10개소 | 10개소 | 10개소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204,000 | 68,000 | 68,000 | 68,000 |
| 도 비 | 204,000 | 68,000 | 68,000 | 68,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②-②-1 |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 및 지원 | · 지역맞춤형 네트워크 활성화 · 대상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계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기도 31개 시·군 맞춤형 시민사회 활성화 및 제도화 기반 마련
- 주제·지역·세대 등 공익활동가 네트워크 다각화를 통한 활동 지속성 및 협력관계 강화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10호.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제12호.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공익활동단체, 공익활동가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252,000천원
- 추진방향
 - 31개 시·군 네트워크 유형화 및 맞춤형 프로젝트 기획 운영
 - 주제·지역·세대별 네트워크 발굴 및 구축
- 사업내용
 - (간담회,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공익활동단체, 활동가 참여 간담회, 지역맞춤형 프로젝트 운영, 성과보고회 등
 -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주제·지역·세대별 간담회, 워크숍 등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분 | 2026 | 2027 | 2028 |
|------------------------|------|------|------|
|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프로젝트 | 1식 | 1식 | 1식 |
| (주제별, 세대별)간담회 등 | 1식 | 1식 | 1식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산 | 252,000 | 84,000 | 84,000 | 84,000 |
| 도비 | 252,000 | 84,000 | 84,000 | 84,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②-②-2 |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 도·시·군 네트워크 협력사업 | 계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군 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10호.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제11호.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시·군센터(경기, 구리, 군포, 광명, 안양, 안성, 평택)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주체 : 경기도, 시·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690,000천원

○ 추진방향

- 도·시·군 센터 간 회의체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 사업내용

- (회의체 운영) 도·시·군 센터 간 정기회의 및 실무자 협력회의 운영

- (협력사업) 공동워크숍, 포럼 등 협력사업 추진

- (신규센터 지원) 신규 개소센터 설치 및 정착 예산 지원, 운영 안정화 지원, 교류 활성화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회의체 운영 및 협력사업 | 1식 | 1식 | 1식 |
| 신규센터 지원 | 1식 | 1식(3개소) | 1식(3개소)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690,000 | 20,000 | 335,000 | 335,000 |
| 도 비 | 270,000 | 20,000 | 125,000 | 125,000 |
| 시군비 | 420,000 | 0 | 210,000 | 210,00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③-①-1 | (가)공익활동 사회적인정 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 공익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 | 계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 및 확산 의제화 및 지원 체계 마련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확산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발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6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제10호.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 경기도-시·군센터, 유관기관 및 단체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122,000천원
- 추진방향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논의 및 실천사례 조사·연구
 - 연구 참여 기반 (가)공익활동 사회적인정 TF 구성·운영
- 사업내용
 - (정책연구) (가)공익활동 사회적인정 TF 참여 조사·연구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정책연구 및 조사 | 1건 | 1건 | 시범사업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122,000 | 32,000 | 40,000 | 50,000 |
| 도 비 | 122,000 | 32,000 | 40,000 | 50,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③-①-2 |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 · 경기공익활동가대회 | 계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공익활동가 인정문화 확산을 위한 교류와 연대, 역량강화 기회 마련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10호.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제11호.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단체 및 공익활동가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추진방향
 - 경기도내 공익활동가 교류의 장, 활동가 주도 공동사업기획·운영
 - 활동가들의 존재감 제고,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참여 유도
- 사업내용
 - (공동주최 및 기획) 31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
 - (본 행사) 네트워크 교류, 공동캠페인, 홍보부스, 문화행사 등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경기공익활동가대회 | 1회 | 1회 | 1회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80,000 | 20,000 | 30,000 | 30,000 |
| 도 비 | 80,000 | 20,000 | 30,000 | 30,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③-②-1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 계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를 통한 공익활동 정책 및 제도개선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10호.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민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주체 : 경기도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추진방향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역할 강화
 - 중앙정부 시민사회활성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 경제, 노동,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별 시민사회 구성원 참여 유도
- 사업내용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분과위원회, 총괄회의 운영 확대
 - (개편 대응) 중앙부처 법령 개정 동향 지속 파악 및 경기도 차원 준비사항 마련 등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 1식 | 1식 | 1식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35,000 | 9,000 | 13,000 | 13,000 |
| 도 비 | 35,000 | 9,000 | 13,000 | 13,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③-②-2 |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 ·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 ·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운영 | 계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기도 공익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민간주도 공론장 활성화
-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3호,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경기도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5조, 제12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민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주체 : 경기도
- 소요예산 : 648,000천원
- 추진방향
 - 경기도민 정책축제 및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해결형 공론장 활성화 및 아이디어 발굴
 -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연결되는 정책 환류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정책축제) 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도민 의견수렴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
 -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도정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론장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경기도민 정책축제 | 1회 | 1회 | 1회 |
| 도민참여 공론장 운영 | 1식 | 1식 | 1식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648,000 | 216,000 | 216,000 | 216,000 |
| 도 비 | 648,000 | 216,000 | 216,000 | 216,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 분류 | 실행과제 | 사업명 | 사업유형 |
|-------|-------------------|------------|------|
| ③-②-2 |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 · 경기공익활동포럼 | 계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책반영을 위한 공론장 마련
* 근거 : 관련조례 제6조제2항제3호. 공익활동 환경조성 및 도민참여의식 제고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가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주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소요예산 : 23,000천원
- 추진방향
 -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공유하는 열린 공론장 운영
 - 도민, 행정, 의회, 공익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의 공익활동 현장 의제 소통 및 정책 환류 강화
- 사업내용
 - (경기공익활동포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연구조사 결과 공유, 현장 의견 수렴 등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사업량)

| 구 분 | 2026 | 2027 | 2028 |
|----------|------|------|------|
| 경기공익활동포럼 | 1회 | 2회 | 2회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
| 예 산 | 23,000 | 3,000 | 10,000 | 10,000 |
| 도 비 | 23,000 | 3,000 | 10,000 | 10,000 |
| 시군비 | 0 | 0 | 0 | 0 |
| 기 타 | 0 | 0 | 0 | 0 |

VI

연도별 추진계획

1. 실행과제별 소관부서 현황

| 번호 | 실행 과제 | 소관부서 |
|-------|-----------------------------------|------------------------------------|
| 계 | 15개 | |
| ①-①-1 |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확산 | 도(소통협치관), 센터, 시·군 센터 |
| ①-①-2 |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 | 센터, 시·군 센터 |
| ①-②-1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도(소통협치관, 여성정책과, 기후정책과), 센터, 시·군 센터 |
| ①-②-2 |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개선 | 도(소통협치관), 센터 |
| ①-③-1 |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도(소통협치관) |
| ①-③-2 |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 도(소통협치관), 센터 |
| ②-①-1 | 관·관 협력: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도(소통협치관) |
| ②-①-2 | 민·관 협력: 민·관·정 간담회, (가)경기공익거버넌스 | 도(소통협치관), 센터, 시·군 센터 |
| ②-①-3 | 민·민협력: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 도(소통협치관), 센터, 시·군 센터 |
| ②-②-1 |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 | 도(소통협치관), 센터 |
| ②-②-2 |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도(소통협치관), 시·군, 센터, 시·군 센터 |
| ③-①-1 |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도(소통협치관), 센터, 시·군 센터 |
| ③-①-2 |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 도(소통협치관), 센터, 시·군 센터 |
| ③-②-1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 도(소통협치관), 시·군 |
| ③-②-2 |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 도(소통협치관), 센터, 시·군 센터 |

※ 센터(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일정 :)

| 구 분 | | 2026 | 2027 | 2028 | 사업유형 |
|-------------|---------------------------------|------|------|------|--------|
| 목표 ① | 공익활동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 | | | | |
| ①-① |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 | | | | |
| ①-①-1 |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 | | | 계속 |
| ①-①-2 |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 | | | | 계속 |
| ①-② | 공익활동 역량강화와 여건 조성 | | | | |
| ①-②-1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 | | 계속 |
| ①-②-2 |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개선 | | | | 신규 |
| ①-③ |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형성 | | | | |
| ①-③-1 |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 | | 신규 |
| ①-③-2 |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 | | | 계속 |
| 목표 ② | 공익활동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 | | | | |
| ②-① | 만관, 관관, 만민 협력기반 추진체계 구축 | | | | |
| ②-①-1 | 관관 협력 관계부서 협약체 구성 | | | | 신규 |
| ②-①-2 | 만관 협력 만관정 간담회 (가)경기공익거버넌스 | | | | 계속, 신규 |
| ②-①-3 | 만민협력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 | | | 계속 |
| ②-② | 사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사군 협력 강화 | | | | |
| ②-②-1 | 사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 | | | | 계속 |
| ②-②-2 | 다양한 도-사군 네트워크 활성화 | | | | 계속 |
| 목표 ③ |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 | | | |
| ③-① | 시민사회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 제고 | | | | |
| ③-①-1 |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 | | 계속 |
| ③-①-2 |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 | | | 계속 |
| ③-② | 공익활동 영역 공론 활성화 | | | | |
| ③-②-1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 | | | 계속 |
| ③-②-2 | 공익활동 현상의 공론과 정책반영 | | | | 계속 |

3. 연도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26 | 2027 | 2028 | 합계 |
|-------|----------------------------------|-------|-------|-------|--------|
| 총 계 | | 3,424 | 4,196 | 4,766 | 12,386 |
| 목표 ① | 공익활동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 | 2,912 | 3,340 | 3,900 | 10,152 |
| ①-① |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 | 169 | 230 | 260 | 659 |
| ①-①-1 |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 135 | 180 | 210 | 525 |
| ①-①-2 |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 | 34 | 50 | 50 | 134 |
| ①-② | 공익활동 역량강화와 여건 조성 | 2,443 | 2,605 | 2,625 | 7,673 |
| ①-②-1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2,443 | 2,605 | 2,625 | 7,673 |
| ①-②-2 |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개선 | 0 | 0 | 0 | 0 |
| ①-③ |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형성 | 300 | 505 | 1,015 | 1,820 |
| ①-③-1 |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0 | 5 | 15 | 20 |
| ①-③-2 |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 300 | 500 | 1,000 | 1,800 |
| 목표 ② | 공익활동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 | 232 | 547 | 547 | 1,326 |
| ②-① | 민·관, 관·관, 민·민 협력기반 추진체계 구축 | 128 | 128 | 128 | 384 |
| ②-①-1 | 관·관 협력: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0 | 0 | 0 | 0 |
| ②-①-2 | 민·관 협력: 민·관·정 간담회, (가)경기공익거버넌스 | 60 | 60 | 60 | 180 |
| ②-①-3 | 민·민협 력: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 68 | 68 | 68 | 204 |
| ②-② | 시·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시·군 협력 강화 | 104 | 419 | 419 | 942 |
| ②-②-1 |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 | 84 | 84 | 84 | 252 |
| ②-②-2 |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20 | 335 | 335 | 690 |
| 목표 ③ |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 280 | 309 | 319 | 908 |
| ③-① | 시민사회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 제고 | 52 | 70 | 80 | 202 |
| ③-①-1 |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32 | 40 | 50 | 122 |
| ③-①-2 |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 20 | 30 | 30 | 80 |
| ③-② | 공익활동 영역 공론 활성화 | 228 | 239 | 239 | 706 |
| ③-②-1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 9 | 13 | 13 | 35 |
| ③-②-2 |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 219 | 226 | 226 | 671 |

Ⅶ **참고자료**

1. 경기도 현행 조례 ----- p. 35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2. 시민사회 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현황 ----- p. 39
 (2-1) (광역)시·도별 시민사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2) 경기도 시·군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

3.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현황 ----- p. 41
 (3-1) 시·도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현황
 (3-2) 시·군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현황

4.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p. 43

5. 경기도 주요 시민사회 정책연구('22.~'25.) ----- p. 45

6. 경기도 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 사업추진 현황 -- p. 47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1.] [경기도조례 제825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로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 법인,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공익활동의 각 주체는 상호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단체 등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민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시 시민사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

3.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4.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 방안
5. 공익활동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7.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9.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11.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12.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13.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법령 제개정·정책 수립·제도정비 등에 대한 제안
3. 시민사회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도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 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
6.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7.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9.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협력의 지원
10. 도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1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 및 조정
12.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
13.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공개모집 시민위원은 위원 전체의 10분의 2를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익활동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기도의회 의원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공익 활동 주체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활동 주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4.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5.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등에 관한 상담·컨설팅
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단체 등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7. 공익활동단체 등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9.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제17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자가 센터를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운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운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도지사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도지사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시·군이 공익활동 증진 사업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2

시민사회 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현황

(2-1) (광역) 시·도별 시민사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연번 | 지역 | 조례 | 위원회명 |
|----|----|--|------------------------------|
| 1 | 서울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
| 2 | 부산 |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 부산시민협치협의회 |
| 3 | 대구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 |
| 4 | 인천 |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 인천민관동행위원회 |
| 5 | 광주 |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 |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위원회 |
| 6 | 울산 |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 공익활동증진위원회 |
| 7 | 경기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
| |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
| 8 | 충북 |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
| 9 | 충남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충남민관협치회의 |
| 10 | 경남 |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시민사회위원회 |
| 11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
| 12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

(2-2) 경기도 시·군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5.12월 기준)

| 구분 | 시군 | 조례명 | 제정일 (개정일) | 규정 내용 | | |
|--------------------------|-----|-------------------------------|----------------------------|----------|---------|----------|
| | | | | 기본 계획 | 위원 회 | 지원 조직 |
| 남부 21개 시·군중 11곳 | 용인 |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22.4.13 | ○ | ○ | ○ |
| | 의왕 | 의왕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21.9.28. | ○ | ○ | ○ |
| | 성남 |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21.9.13. | ○ | ○ | ○ |
| | 김포 |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1.7.2. | ○ | ○ | ○ |
| | 광명 |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21.12.23. (’22.4.19.) | ○ | ○ | ● |
| | 안성 |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2.17. (’21.12.17.) | X | ○ | ● |
| | 광주 |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1.1.4. (’24.12.16.) | ○ | ○ | ○ |
| | 군포 |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3.16. (’25.10.10.) | ○ | ○ | ● |
| | 평택 |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2.18. (’24.2.20.) | ○ | ○ | ● |
| | 부천 |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0.12. | ○ | ○ | X |
| | 안양 |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22.10.20. | ○ | ○ | ● |
| 북부 10개 시·군중 3곳 | 포천 |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1.5.6. (’23.9.27.) | ○ | ○ | ○ |
| | 구리 |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7.12.27 (’20.12.18) | ○ | ○ | ● |
| | 남양주 |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2024.4.4. | ○ | ○ | ○ |

참고 3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현황

(3-1) 광역시·도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현황

(’25.12월 기준)

| 연번 | 지역 | 센터명 | 설립일 | 운영형태 | 비고 |
|----|----|------------------|---------------------------|------|----|
| 1 | 부산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09.7.16. | 민간위탁 | |
| 2 | 광주 | 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 ’09.7.30. | " | |
| 3 | 충북 |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 ’12.10.18. | " | |
| 4 | 서울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 ’13.11.15. (’23.2.13.) | " | |
| 5 | 대구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 ’16.4.5. | " | |
| 6 | 경기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20.3.16. | " | |
| 7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 ’21.3.15. | " | |

(3-2) 시·군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현황

□ 공익활동 지원: 총 6개 시·군(직접 3, 민간위탁 3)

| 연번 | 시군명 | 시 설 현 황 | 비고 |
|----|-----|---|----|
| 1 | 평택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일 : ’22. 7. 7. ○ 기관명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직/운영 : 민간위탁(센터장1,팀장,직원1) ○ ’26년 예산액 : 350,605천원 ○ 담당부서 : 자치행정협치과 주민자치팀(031-8024-3183) | |
| 2 | 군포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일 : ’21. 7. 28. ○ 기관명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직/운영 : 시 직접 ○ ’26년 예산액 : 62,295천원 ○ 담당부서 : 자치분권과 협치지원팀(031-390-4032) | |
| 3 | 구리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일 : ’21. 11. 8. ○ 기관명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직/운영 : 시 직접 ○ ’26년 예산액 : 104,994천원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민간협력팀(031-550-2058) | |

| 연번 | 시군명 | 시 설 현 황 | 비고 |
|----|-----|---|----|
| 4 | 안성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일 : '22. 3. 22. ○ 기관명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직/운영 : 시 직접 ○ '26년 예산액 : 167,143천원(사업비 전액삭감) /비예산 사업예정 ○ 담당부서 : 소통협치담당관 시민활동통합지원단(031-678-0781) | |
| 5 | 광명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일 : '23. 7. 12. ○ 기관명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직/운영 : 민간위탁(센터장1, 팀장1, 직원1) ○ '26년 예산액 : 342,900천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02-2680-2039) | |
| 6 | 안양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일 : '25. 7. 29. ○ 기관명 :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직/운영 : 민간위탁(센터장1, 팀장1, 직원) ○ '26년 예산액 : 304,817천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소통협치팀(031-8045-2962) | |
| - | 성남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일 : '22. 4. 27. ○ 조직/운영 : 시 직접 ○ '24년 예산액 : 15,760천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관협력팀(031-750-2322) <p>※ 시 직접 운영 형태로 '22.4.27. 개소하였으나, 타 센터와 기능·역할 중복 이유로 '23.10. 센터 폐지 결정, '24.5.19. 폐지</p> | 폐지 |

참고 4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사업개요

- 근거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 사업장소 : 2개소
 (남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신관2층(경기도청옛청사) ※ '20.3.16. 개소, 148㎡(44평)
 (북부) 의정부시 추동로 140, 2층(북부상공회의소) ※ '22.11.21. 개소, 292㎡(88평)
- 조직/인원 : 총 1실 4팀, 15명(센터장 1, 실장 1, 팀장 4, 팀원 9)
 (남부) 센터장 1, 팀장 2, 팀원 5 / (북부) 실장 1, 팀장 2, 팀원 4
- 예산액(도비 100%) : ('24) 1,600백만원 → ('25) 2,045백만원 → ('26) 2,031백만원
 (단위:백만원)

| 연도 | 총예산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2026 | 2,031 | 869 | 289 | 874 |
| 2025 | 2,045 | 869 | 276 | 900 |
| 2024 | 1,600 | 838 | 228 | 5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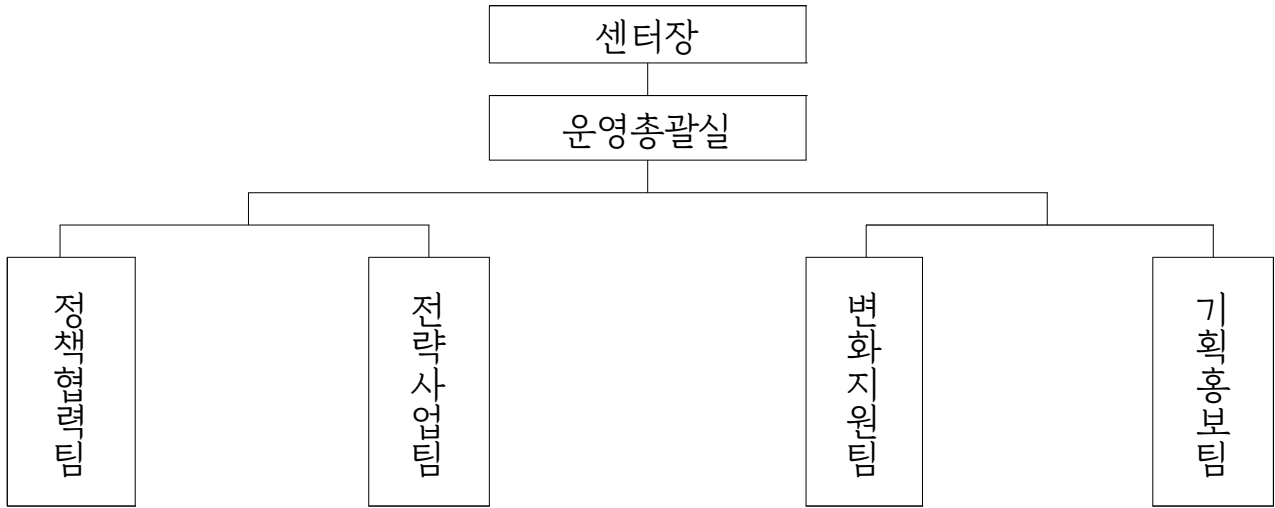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 위탁기간 : '24. 1. 1. ~ '26. 12. 31.(※ 기수탁 : '20. 3. 2. ~ '23. 12. 31.)
- 주요사업 : 공익활동촉진 인재육성, 상담·컨설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23 ~ '25 사업추진현황

| 2023년 (8개 사업) | 2024년 (6개 사업) | 2025년 (7개 사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단체(기획/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 공익활동 자문단(상담소) 운영 ○ 공익활동가 교육 및 역량강화지원 ○ 공익네트워크 활성화(시군협력, 공익활동페스타, 연찬회 등) ○ 경기북부공익의제발굴단운영 ○ 1기업-1단체공익파트너십 캠페인 ○ 공익활동정책연구 및 조사 ○ 공익활동 기록전문가 양성 및 도민 정보 제공 (에디터운영, 시민기록컨퍼런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단체(지역문제해결/비영리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 상담, 비영리회계지원 ○ 공익활동가 교육 및 역량강화 ○ 공익네트워크 활성화(주제,대상별 네트워크, 공익활동페스타 등) ○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 (공익의제해결형프로젝트, 1기업-1단체공익파트너십 캠페인) ○ 공익활동정책연구 및 조사, 경기공익활동포럼 운영 ○ 공익활동 아카이브전문가 양성 및 도민 정보 제공, 온라인자료관'툭'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단체(지역문제해결 등/비영리스타트업 연차별종합지원), 공익활동상담, 비영리회계지원, 조직개선지원 등 ○ 공익활동가 교육 및 역량강화 ○ 청년공익해봄프로젝트 ○ 공익네트워크 활성화 ○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 (공익의제해결형프로젝트, 1기업-1단체공익파트너십 캠페인) ○ 공익활동정책연구 및 조사, 경기공익활동포럼 운영 ○ 공익활동 아카이브전문가 양성 및 도민 정보 제공, 공익활동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조직 및 부서 현황

○ 조직도 : 1실 4팀



○ 인 력 : 정원 15명

○ 부서현황

| 구 분 | | 주 요 업 무 |
|-----------|------------------|--|
| 센터장 | | ○ 센터 운영 총괄 |
| 운영총괄실(3) | | ○ 센터 업무 총괄, 부서 간 업무조정 ○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인사·노무·계약관리 ○ 회계·총무·시설관리 ○ 성과 관리 ○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 등의 제공 |
| 남부 (5) | 정책 협력팀 (3) | ○ 공익활동단체 등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 ○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공익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대외협력 |
| | 전략 사업팀 (2) | ○ 공익활동 전략사업 발굴 시행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체발굴 및 지원 ○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등 인큐베이팅 지원 |
| 북부 (6) | 변화 지원팀 (3) | ○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등에 관한 상담·컨설팅 ○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
| | 기획 홍보팀 (3) | ○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공익활동 홍보사업 ○ 공익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공익활동 페스타 운영 |

참고 5

경기도 주요 시민사회 정책연구('22.~'25.)

- 2022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기초연구를 통해 제2기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계획 도출
(이호·김소연·조철민·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 추진방향 : 행정 역할 강화, 연결과 통합,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 역할,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 등 제2기 핵심 추진 방향 도출
2. 범위 및 원칙 정립 : 공익활동단체 및 활동가, 경기도민 등 역량강화 활동 지원의 대상주체의 범위 구체화 및 원칙 정립
3. 제1기 기본계획 평가 반영 : 사업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사업대상의 확대, 네트워크 및 기반강화 분야 사업 강화로 사업 재편

- 2023년,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 내 공익활동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조경훈·김종수·장원웅·최유진·이수정·홍상우·장현경,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책대안 발굴 : 공익활동 개념 정립, 공공기관 ESG 추진현황검토, 공익활동 평가체계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민간 중심 지역재단 모델 제안
2. 공익활동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제안: 일반시민, 정책관계자, 심층인터뷰(공익활동가, 지역재단 운영자, 관련 연구자 등) 조사연구를 통한 공익활동 영역 일자리 연계, 자원연계 등 사회경제기반 조성의 대안 제시
3. 시민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공익활동 DB구축 제안,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자조적 중심조직으로서 경기도 지역재단 설립 제안

- 2024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 체계수립' 연구를 통해 개소 이후 5년간의 사업 및 환경 분석을 통해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계자 및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비전전략체계 수립
(조철민·김유리·정란아·박운정·권지현·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 비전전략체계 도출 : 비전 ‘공익활동으로 연결된 생동하는 경기시민사회’, 미션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단체와 활동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촉진합니다.’
2. 4대 핵심목표 및 15대 추진과제 도출 : 공익활동의 사회적가치 실현, 도민의 참여와지지 확장, 다 영역 간의 연대와 협력, 생동하는 조직 등 4대 핵심목표 및 이에 부합하는 15대 추진과제 설정 및 핵심사업 선정
3. 센터 슬로건 및 핵심가치 설정 : 슬로건 ‘공익활동이 내 일(내일)이 되는 세상 도출, 핵심가치로 연대, 사회적 책임, 포용성, 협력 4대 가치 도출

□ 2025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제3기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계획 도출 (조철민·박영선·서미화)

1. 추진방향 : 제1·2기 기본계획 이행성과 분석 결과 반영, “경기도가 지니는 위상과 3기 기본계획으로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유지·발전시킬 영역과 새롭게 시도할 전향적인 영역의 균형있는 배치 필요
2. 추진체계 : 현재 관련 정책의 추진 역할이 공익활동지원센터 편중, 다양한 민·관 영역을 넘어서는 역할분담에 기반한 협력구조, 시·군 중심주체 형성과 협력 강화 필요
3. 제3기 기본계획 비전체계 및 전략 도출 : ’24년 도출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계획과 연계, 비전과 전략목표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3가지 전략목표에 걸친 7대 전략과제 제시

□ 2025년,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를 통해 비영리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개발 도출 (이명신·이은주·구현주)

1. 현황 분석 : 비영리 일자리 정책현황 조사 분석,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 및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관련 정책사례 조사 분석
2.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제안 :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및 시민사회 활성화 실현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및 9개 추진과제 도출

참고 6

경기도 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 사업추진 현황

(시·군 및 시·군 센터 포함)

(단위 : 천원)

| 기관 | 부서 | 사업분류 | 사업명 | 예산액 | | | |
|-----|-------------------|------------------------------|--------------------------------------|-----------|-----------|---------|----|
| | | | | 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 계 | | 49개 사업 | 4,075,545 | 3,428,500 | 647,045 | 0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1-1-1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확산 | 공익활동 아카이브 및 홍보 | 68,000 | 68,000 |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활동 페스타 | 50,000 | 50,000 |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해봄 프로젝트 | 16,700 | 16,700 | | |
| 평택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문화 확산 | 15,000 | | 15,000 | |
| 안양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커뮤니티기반협력, 청년, 대학생 지원 공익활동사업공모 | 33,000 | | 33,000 | |
| 안성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동체거점공간, 지역이슈원탁회의 | 10,000 | 1,500 | 8,500 | |
| 양주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리빙랩 프로젝트 | 16,000 | | 16,000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1-1-2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확대 | 공익활동 온라인 플랫폼 운영 | 34,000 | 34,000 | | |
| 안양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관대관, 공유 오피스, 정보조사 및 아카이빙, 자원정보연계플랫폼 | 11,900 | | 11,900 | |
| 안성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동체거점지원 사업 | 64,839 | | 64,839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1-2-1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공익활동가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 45,000 | 45,000 |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활동상담소 | 21,000 | 21,000 |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활동단체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 102,300 | 102,300 | | |
| 경기도 | 소통협치관 여성정책과 기후정책과 |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 2,275,000 | 2,275,000 | | |
| 평택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활동 교육지원 및 활성화 지원 | 36,000 | | 36,000 | |

| 기관 | 부서 | 사업분류 | 사업명 | 예산액 | | | |
|-----|-----------------|-----------------------------------|--------------------------------|---------------|---------|--------|----|
| | | | | 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안양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활동가 및 시민 역량화교육, 공익활동상담소 | 11,450 | | 11,450 | |
| 안성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1-2-1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공익활동네트워크,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 92,304 | 3,000 | 89,304 | |
| 광명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활동기반강화, 공익활동지원사업 | 44,540 | | 44,540 | |
| 군포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활동기역량강화, 단체협력, 공익활동활성화공모사업 | 18,000 | | 18,000 | |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 14,000 | | 14,000 | |
| 구리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활동가 양성교육, 단체 육성지원 사업 | 63,200 | | 63,200 | |
| 경기도 | 소통협치관 공익활동 지원센터 | | 1-2-2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개선 | 공익활동지원사업 개선 | 0 | 0 | |
| 경기도 | 소통협치관 | 1-3-1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TF운영을 통한 의제화 | 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운영 | 0 | 0 |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1-3-2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 공익활동 디딤돌 지원사업 | 300,000 | 300,000 | | |
| 경기도 | 소통협치관 | 2-1-1 관관협력(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공익활동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0 | 0 | | |
| 경기도 | 소통협치관 | 2-1-2 민관협력(민관정간담회, 공익활동거버넌스) | (가칭)경기공익 거버넌스 구성·운영 | 60,000 | 60,000 | | |
| 평택시 | 자치행정과 | | 협치회의 운영 | 59,660 | | 59,660 | |
| 군포시 | 자치분권과 | | 공익활동가 네트워크사업 | 2,000 | | 2,000 | |
| 안양시 | 자치행정과 | | 민관협치활성화 사업 | 70,692 | | 70,692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2-1-3 민민협력(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 68,000 | 68,000 | |
| 안양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기업-공익단체 연계 활성화 | 5,000 | | 5,000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2-2-1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 및 지원 | 지역맞춤형 대상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84,000 | 84,000 | | |

| 기관 | 부서 | 사업분류 | 사업명 | 예산액 | | | |
|-----|-----------------|-------------------------------|------------------------|---------|---------|--------|----|
| | | | | 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광명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네트워크 플랫폼 함께 | 2,700 | | 2,700 | |
| 경기도 | 소통협치관 공익활동 지원센터 | 2-2-2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도-시군네트워크 협력사업 | 20,000 | 20,000 | | |
| 평택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활동 네트워크 모임 강화 | 6,000 | | 6,000 | |
| 안양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문제해결공익활동 네트워크 지원 등 | 11,600 | | 11,600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3-1-1 공익활동 사회적인정 TF운영을 통한 의제화 | 공익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 | 32,000 | 32,000 |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3-1-2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캠페인 | 경기공익활동가 대회 | 20,000 | 20,000 | | |
| 평택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활동공유회 공익활동가대회 | 12,000 | | 12,000 | |
| 안양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안양공플, 공익활동메이트 | 8,600 | | 8,600 | |
| 광명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공익활동가의 사회적인정을 위한 공동캠페인 | 13,460 | | 13,460 | |
| 경기도 | 소통협치관 | 3-2-1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운영 | 9,000 | 9,000 | | |
| 광명시 | 자치분권과 | | 시민사회활성화 및공익활동증진 위원회 운영 | 4,800 | | 4,800 | |
| 군포시 | 자치분권과 | |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 3,200 | | 3,200 | |
| 경기도 | 소통협치관 | 3-2-2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 경기도민 정책추제 도민참여공론화사업 | 216,000 | 216,000 | | |
| 평택시 | 자치분권과 공익활동 지원센터 | | 정책공론장 운영 시민활동지원조직협력 | 9,500 | | 9,500 | |
| 경기도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경기공익활동포럼 | 3,000 | 3,000 | | |
| 안양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네트워크 컨퍼런스 | 5,600 | | 5,600 | |
| 광명시 | 공익활동 지원센터 | | 의제공작소 | 6,500 | | 6,500 | |